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주요 내용은?

2024.07.18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주요 내용은?

금융당국은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한 해설서를 마련함

본 카드뉴스에서는 해설서 내용 중
아래의 5가지 주제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Contents

I	책무란 무엇인가?
II	책무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III	책무는 어떻게 이행하는가?
IV	내부통제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V	책무 관련 제재는 무엇인가?

I. 책무란 무엇인가?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책무와 업무의 관계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되는 개념

책무의 유형 (시행령 별표 1 일부 발췌)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사가 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경영업무와 관련한 책무	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경영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관리업무 관련 책무• 준법감시업무 관련 책무•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책무• 정보보안업무 관련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 및 적금 업무 관련 책무• 투자매매업무 관련 책무• 신탁업무 관련 책무• 연금업무 관련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업무 관련 책무• 보수업무 관련 책무• 자회사 관리업무 관련 책무• 광고업무 관련 책무…

II. 책무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책무를 배분 받을 수 있는 자

금융회사의 ①임원, ②직원과 ③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음

- 임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를 포함하며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함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에게는 책무를 배정할 수 없음)
-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또는 임원이 없어서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배분이 가능함
- 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

책무의 배분 기준과 자격요건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

- 누락: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 중복: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 편중: 해당 임원이 책무에 따른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해야 함

책무를 배분 받는 자는 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III. 책무는 어떻게 이행하는가? (대표이사)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 받으므로,
다음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내부통제기준 등 총괄 관리조치

01	내부통제 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진행·운영
02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 및 적정성 점검
03	내부통제 기준 등의 위반사실 적시 파악을 위한 제보·신고 등 관리체계 구축·운영
04	각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수행 점검
05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과 취약요인에 대한 점검
06	내부통제 등의 위반사항이 반복·장기화되거나, 광범위한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
07	각 관리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III. 책무는 어떻게 이행하는가? (임원)

책무를 배분 받은 임원이 소관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 받으므로, 아래의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해야 함

내부통제기준 등 총괄 관리조치

01	내부통제 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02	내부통제 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03	임직원이 법령, 내부통제 기준 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04	점검과정에서 파악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 및 미흡사항 시정·개선 조치
05	4)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06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07	점검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요구

IV. 내부통제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을 심의·의결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시점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하여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설치해야 함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로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함. 위원회에 대표이사를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

! 기존에 운영하는 내부통제 관련한 위원회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관련 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회사 자율이나,

-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되는 내부통제위원회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은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치관련 참고사항

정관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내부통제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정관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근거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결정할 수 없음

V. 책무 관련 제재는 무엇인가?



대표이사, 임원

위반시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조치 가능



직원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1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제재의 면제 및 감경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으며,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